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507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50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52442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조경윤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22. 11. 10.

판결선고 2023. 1.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52442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20,025원 및 그 중 49,819,802원에 대하여 2020. 9. 14.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서를 C에 제출하고 2019. 7. 22. C으로부터 50,000,000원(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 이후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고, 피고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2.경부터 C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20. 5.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C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9. 14. C에 대출원리금 합계 50,636,802원(원금 50,000,000원 + 이자 636,8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0. 9. 14. 위 대위변제금 중 817,000원을 회수함으로써 그 잔존 대위변제금은 49,819,802원(50,636,802원 - 817,000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223원[817,000원 × 10% × 1(2020. 9. 14. ~ 2020. 9. 14.) ÷ 365,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49,820,025원(49,819,802원 + 223원) 및 그 중 49,819,8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1.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최정인, 판사 김창형